

「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5년 7월 7일

나. 발 의 자: 김정도 의원

다. 찬 성 자: 김근한·김민성·김영태·이명희·이상호·이지연·
장미경·허민근 의원(8인)

라. 회부일자: 2025년 7월 8일

마. 상정일자: 2025년 7월 16일

제28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김 정 도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중복적인 자치법규를 통합하고 일괄 정비하여 구미 시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해석의 모호성을 방지하여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장사시설 입지선정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장사시설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무연고 유골 안치 연수 변경(안 제25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, 제26조의2
- 기 타: 조례안 예고(2025. 7. 8. ~ 7. 13.) 결과 의견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영 훈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중복적인 자치법규를 통합하고 일괄 정비하여 구미 시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해석의 모호성을 방지하여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「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와 「구미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」의 내용을 「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로 통합하였으며, 장사시설 설치·운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, 법규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됨.

- 또한, 안 제25조에 상위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무연고 유골 안치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유골 관리기간을 현실화한 것은 적절하며, 제7조의 재정지원 규정과 관련해서는 지원 대상·규모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생략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